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1170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4. 20.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440,136원 및 그중 10,985,445원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2017. 3.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통기소 2017. 3. 31. 접수 제25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통기의 말소통기절차를 이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 1) 피고 B은 2002. 7. 1.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약정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신용카드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23.7%이다.
- 2) 그 후 피고 B은 소외 회사로부터 2017. 3. 7. 카드로 방식으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9. 3. 21.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결제하지 못한 대금이 5,985,445원에 이르렀다.
- 3) 그 후 소외 회사는 2019. 4. 3.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 및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 4) 한편 2021. 3. 10.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의 원리금은 총합계 19,440,136원[= 원금 합계 10,985,445원(= 신용카드대금 5,985,445원 + 대출금 5,000,000원) +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8,454,691원(= 신용카드대금 관련 4,587,461원 + 대출금 관련 3,867,230원)] 및 그중 원금 합계 10,985,44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이 된다.

나. 증여계약

피고 B은 2017. 3. 17.경 유일한 소유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C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21. 3. 10.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신용카드대금과 대출원리금의 합계액 19,440,136원 및 그중 원금 합계 10,985,445원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본안 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수한 2019. 4. 3.경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9. 4. 3.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 및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인 2020.

5. 3.보다 앞선 시점에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B이 사해의 의사로써 유일한 보유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C의 본안 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소외 회사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사용약정에 터 잡아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그의 유일한 보유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자신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되고,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순형

별지